# 예비군 및 민방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및 민방위 ]**

이 콘텐츠는 예비군의 편성기준, 내가 어느 예비군에 속할 수 있는지, 해당 예비군의 임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알아봅니다.

더불어 민방위대의 종류와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 대원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 . . . . 1
1. 예비군 . . . . . 4
1.1. 예비군의 조직 . . . . . 4
1.1.1. 예비군의 대상 . . . . . 4
1.1.2. 예비군의 종류 . . . . . 6
1.2. 예비군훈련 . . . . . 10
1.2.1.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 . . . . 10
1.2.2.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 . . . . 13
1.2.3. 동원예비군훈련 . . . . . 18
1.2.4. 지역예비군훈련 . . . . . 22
1.3. 예비군 동원(전시 · 사변 등) . . . . . 25
1.3.1. 병력동원소집 대상 및 통지 등 . . . . . 25
1.3.2.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 . . . . 28
1.4. 예비군 관련 처벌과 보상 . . . . . 29
1.4.1. 예비군 관련 처벌 등 . . . . . 29
1.4.2.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 . . . . 31
2. 민방위 . . . . . 38
2.1. 민방위대의 조직 . . . . . 38
2.1.1. 민방위의 대상 . . . . . 38
2.1.2. 민방위대의 종류 . . . . . 41
2.2.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 . . . . . 45
2.2.1. 민방위 교육훈련 . . . . . 45
2.2.2. 민방위 대원 동원 . . . . . 49
2.3. 민방위 관련 처벌과 보상 등 . . . . . 51
2.3.1. 민방위 관련 처벌 등 . . . . . 51
2.3.2.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 . . . . 52

# 1. 예비군

## 1.1. 예비군의 조직

### 1.1.1. 예비군의 대상

#### 예비군의 이해

##### “예비군”이란

▪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

##### 예비군의 임무

▪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2조).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위 2. 및 3.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 의무적 예비군

##### 예비군 조직 대상자 및 복무기간

▪ 예비군은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고, 그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대상자 | 복무기간 |
| --- | --- |
| 1.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현역 복무 종료 이후 병역의무**

**Q)** 현역 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6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니고,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는 40세까지입니다.

[출처: 2026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2쪽 참조]

###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예비군 추가 편입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위 2. 또는 3.에 따른 복무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통·리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비군 조직 제외

▪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예비군

#### "지원예비군"이란

▪ 예비군 조직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그 중에서 선발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9호 본문).

#### 예비군대원 지원

▪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예비군 편입 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역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

▪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은 예비군으로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이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4호).

▪ 지원예비군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 1.1.2. 예비군의 종류

### 지역예비군

#### "지역예비군"이란

▪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

#### 지역예비군의 편성기준

▪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고 함)로 편성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자치구 단위(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

- 중대: 동·읍·면 단위
- 소대·분대: 통·리 단위

▪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

### 지역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변경

▪ 지역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5항 참조).

## 직장예비군

### "직장예비군"이란

▪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5호).

###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

- 여단: 7,201명 이상
- 연대: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 대대: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 다음의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다만, 「예비군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예비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

###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 직장예비군 부대는 "①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③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제6항).

### 직장예비군 대원의 퇴직 등

▪ 직장예비군 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경우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되고, 그 예비군 대원은 지역예비군에 편성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7항 참조).

###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 직장예비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예비군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9항 참조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위의 직장예비군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은 경우
- 정기감사(「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제2항제2호).

▪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제2항제3호).

## 대학 직장예비군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기준

▪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1호).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 대학 직장예비군부대는 다음의 사람으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 고용원 중 예비군
- 지원예비군

▪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바목).

> ※ **대학 직장예비군의 훈련**
>
> **Q1)** 대학교 재학생인 예비군은 다른 예비군과 똑같은 훈련을 받게 되나요?
>
> **A1)** 대학교 재학생은 학업보장을 위해 예비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매년 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며, 이월된 훈련은 8년차까지 받게 됩니다(2026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7쪽 및 24쪽 참조).
>
> **Q2)** 대학 직장예비군은 어디서 훈련받나요?
>
> **A2)** 대학 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에서 동원지정된 대학생은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1일 8시간)을 받습니다.
>
>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참조>

## 비상근예비군

### "비상근예비군"이란

▪ "비상근예비군"이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3제1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상비예비군 제도 참조).

### 비상근예비군 구분

▪ 비상근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 **비상근예비군의 업무**
>
> **Q)** 비상근예비군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
> **A)**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중·소대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전투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무기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장비와 물자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 <출처: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국민참여-예비역광장-상비예비군 제도 참조>

### 비상근예비군 선발

▪ 비상근예비군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3제2항).

▪ 비상근예비군은 국방부장관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하되,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 ※ 비상근예비군의 선발공고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상근예비군의 소집 및 보상

▪ 비상근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병역법」 제46조제1항)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비상근예비군은 다음의 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8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상비예비군> 참조].

- 단기 비상근예비군: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기 비상근예비군: 15만원(평일·휴일 동일)

> ※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 시 혜택**
>
> - 비상근예비군은 훈련 또는 복무를 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제도안내-예비군제도-상비예비군 제도 참조).
>
> ·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와 소속 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
>
> · 소집 기간 중 중식 제공, 소집 기간 중 부상 시 군 병원 진료 가능
>
> ·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희망시 가점 부여
>
> · 우수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 · 1년 단위 훈련(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 시 우대

## 1.2. 예비군훈련

### 1.2.1.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 예비군훈련의 구분 및 대상

##### 예비군훈련의 구분

▪ 예비군훈련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하며,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으로 구분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1호).

▹ "동원예비군훈련"은 간부 1~6년차, 병 1~4년차 예비군이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여 실시하는 훈련인 "동원훈련 I 형(숙영)"과 소집부대가 미지정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하는 훈련인 "동원훈련 II 형(비숙영)"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 "지역예비군훈련"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 ※ 동원예비군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비군-예비군훈련-동원예비군훈련 > 또는 <예비군-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의 대상

▪ 예비군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으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兵)은 예비군복무 8년 차까지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1항).

▪ 예비군훈련은 그 훈련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 구 분 | | | 동원예비군훈련 | | 지역예비군훈련 | |
|---|---|---|---|---|---|---|
| | | | 동원훈련 Ⅰ형(숙영) |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 | - | - | - | - |
| 병 | 14 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 - | - |
| | | 동원훈련 Ⅰ형 미참석자 | 28시간 (2박 3일) | 32시간 (4일) | - | - |
|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 | 32시간 (4일) | - | - |
| | | 공군 병 | - | 28시간 (2박 3일) | - | |
| | 56 년차 | | - | - | 8시간 | 12시간 |
| | 78 년차 | | 미이수 훈련 | | | |
| 간부 | 1~6 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28시간 (2박 3일) | - | - | - |
| |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 | 28시간 (2박 3일) | - | - |
| | 7년차연령정년 | | 미이수 훈련 | | | |

## 예비군훈련 소집

### 예비군훈련 소집방법

▪ 동원훈련 Ⅰ형 소집은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전자고지에 따라 소집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1항 본문).

▪ 동원훈련 Ⅱ형, 상비예비군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2항).

▪ 동원예비군의 불시 동원훈련 Ⅰ형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 「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하여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곳 또는

> 이메일·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일정

▪ 예비군훈련의 소집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훈련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가 통지되며, 각 수단별 소집통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항제5호 및 제10조제7항제2호나목·다목).

- 모바일 전자고지: (고지일 포함)훈련소집 16일 전까지 완료
-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전달일 미포함)훈련소집 7일 전까지 완료

▪ 모바일 전자고지로 소집통지된 경우 소집일 16일 전(고지일 포함)까지 수령 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고지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재통지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항제6호).

## 예비군훈련 신청

###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동원훈련 II 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및 제10조제5항 참조).

▪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항제2호 및 제10조제7항제2호가목 참조).

### 전국단위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동원훈련 II 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참조).

▪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 또는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훈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참조).

▪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7항).

▪ 전국단위훈련 신청은 훈련소집 3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신청일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홈페이지-훈련신청-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이란? 참조).

### 휴일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휴일에 훈련(동원훈련 II 형과 기본훈련, 작계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참조).

▪ 훈련소집일정은 연초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 또는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훈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은 훈련소집 3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신청일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홈페이지-훈련신청-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이란? 참조).

※ 예비군 훈련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훈련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2.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 예비군훈련의 연기

#####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

▪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함)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참조).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예시)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참조)**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예비군훈련의 종류에 따라 위 연기사유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비군훈련별 연기사유와 그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

▪ 예비군훈련 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동원훈련 I 형(병력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제2항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참조)

| 구분 | 동원훈련 I 형 연기 신청 |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br>•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br>• 병무청 모바일앱<br>-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 내 담당 부서 |
| 신청기한 | 훈련소집 5일 전까지<br>(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 제출 가능) |
| 구비서류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
| 민원상담 | -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br>- 병무민원상담(☎ 1588-9090) |

2. 동원훈련 II 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예비군 홈페이지-훈련연기-훈련연기란? 참조)

| 구분 | 동원훈련 II 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연기 신청 |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br>•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br>• 예비군 모바일앱<br>- 방문 신청: 관할 예비군 부대<br>- 대리 신청: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 신청기한 | 훈련소집 1일 전까지<br>[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 근무일 이내에 연기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 구비서류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
| 민원상담 | -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br>-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 예비군훈련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mma.go.kr )>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의 보류

###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

▪ 예비군훈련 보류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동원훈련 II 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말함) 소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예비군법」 제6조제3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3조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 법규 보류 대상자> |
|---|
|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br>•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br>•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br>•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br>•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함)<br>•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br>•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br>•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br>•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br>•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br>•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br>•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br>•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2. 국방부 방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전면보류 대상자(「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6)

| < 방침 전면보류 대상자 > | |
|---|---|
| • 우편집배원<br>• 41세 이상 간부<br>• 대통령실<br>• 국군 정보사<br>• 법무부 출입국관리직<br>•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br>•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br>• 세관의 조사공무원<br>• 경찰 학교 | • 청원 경찰<br>• 보호직<br>• 질병 및 심신 장애인<br>• 구속 수감자<br>• 기초생활 수급자<br>•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br>• 여군 출신 예비군<br>•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br>• 민영교도소 직원 |

3. 국방부 방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일부보류 대상자(「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6)

| 방침 일부 보류 직종 | | 이수 필요 훈련 |
|---|---|---|
| 국정원 | | 작계훈련(2회) |
| 민방공 경보요원 | | 기본훈련 |
| 법관 및 검사 | | 기본훈련 |
|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 작계훈련(1회) |
| 특수경비원 | | 작계훈련(1회) |
| 각급 학교 교사 | | 기본훈련 |
| 대학 교수 | | 기본훈련 |
| 각급 학교 학생 | | 기본훈련 |
|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 | 기본훈련 |
| 전파 감시직 | | 기본훈련 |
| 국가안보 통신요원 | | 작계훈련(2회) |
| 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작계훈련(2회) |
|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작계훈련(1회) |
| 철도 특별 사법경찰관 | | 작계훈련(2회) |
| 소방학교(간부후보생) | | 기본훈련 |
| 광부 | | 기본훈련 |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운전,신호,전기 | 작계훈련(2회) |
|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작계훈련(2회) |
| | 차장, 검수원 | 작계훈련(1회) |
|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 기본훈련 |
| 직업훈련생 | | 기본훈련 |
|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 기본훈련 |
| 선박, 어선 승선자 | | 기본훈련 |
|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 기본훈련 |

| | |
|---|---|
| 도로공사 근무요원 | 기본훈련 |

###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

▪ 예비군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와 관련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참조).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br>• 예비군앱 |
| 방문 신청 | 관할 예비군 부대 방문 |
| 대리 신청 |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 신고

▪ 예비군훈련을 보류받던 사람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의3제2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4호가목).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신고 |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br>• 예비군 모바일앱 |
| 방문 신고 | 관할 예비군 부대 방문 |
| 대리 신고 |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 예비군훈련 보류자 처리**

**Q1)**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면, 나중에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1)**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고, 훈련의 일부만 보류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가목2)].

**Q2)** 예비군훈련은 언제까지 보류되나요?

**A2)**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유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나목1)·2)].

**Q3)** 해외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 유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3)**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됩니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합산하여 처리되고,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라목1)].

※ 예비군훈련 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및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3. 동원예비군훈련

#### 동원예비군훈련의 구분

##### "동원훈련 I 형(숙영)"이란?

▪ "동원훈련 I 형(숙영)"이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동원지정자)을 대상으로 소집 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하며,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실시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제3호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가목).

※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4조 및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조의2제2호).

※ 동원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II 형(비숙영)"이란?

▪ "동원훈련 II 형(비숙영)"이란 소집부대가 미지정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나목).

#### 동원에비군훈련의 대상 및 훈련시간

##### 동원예비군훈련의 대상

▪ 동원훈련 I 형은 동원지정자 중에서 "① 예비군 복무 1~6년차 장교(준사관을 포함)와 부사관, ② 예비군 복무 1~4년차 병(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제1항).

▸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9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항).

▪ 동원훈련 II 형은 “1~4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1~6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간부(하사 이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 I 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1호 본문).

### 동원예비군훈련의 훈련시간

▪ 동원예비군훈련의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동원예비군훈련</th></tr>
<tr><th>동원훈련<br>I 형(숙영)</th><th>동원훈련<br>II 형(비숙영)</th></tr>
<tr><td colspan="3">신규 전역자(간부/병)</td><td>-</td><td>-</td></tr>
<tr><td rowspan="5">병</td><td rowspan="3">14<br>년차</td><td>병력동원소집<br>대상자</td><td>28시간<br>(2박 3일)</td><td>-</td></tr>
<tr><td>동원훈련 I 형<br>미참석자</td><td>28시간<br>(2박 3일)</td><td>32시간<br>(4일)</td></tr>
<tr><td>병력동원소집<br>미대상자</td><td>-</td><td>32시간<br>(4일)</td></tr>
<tr><td colspan="2">공군 병</td><td>-</td><td>28시간<br>(2박 3일)</td></tr>
<tr><td colspan="2">56 년차</td><td>-</td><td>-</td></tr>
<tr><td colspan="3">78 년차</td><td colspan="2">미이수 훈련</td></tr>
<tr><td rowspan="4">간부</td><td rowspan="2">1~6<br>년차</td><td>병력동원소집<br>대상자</td><td>28시간<br>(2박 3일)</td><td>-</td></tr>
<tr><td>병력동원소집<br>미대상자</td><td>-</td><td>28시간<br>(2박 3일)</td></tr>
<tr><td colspan="3">7년차연령정년</td><td colspan="2">미이수 훈련</td></tr>
</table>

▹ 동원훈련 I 형은 2박 3일로 하되, 천재지변·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1항).

▹ 동원훈련 II 형은 4일 또는 2박 3일로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3호).

> ※ **Q&A 동원훈련 I 형과 동원훈련 II 형의 차이**
>
> **Q)** 동원훈련 I 형과 동원훈련 II 형의 소집 통지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A)** 동원훈련 I 형은 「병역법」 제50조, 동원훈련 II 형은 「예비군법」 제6조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I 형은 "지방병무청"에서, 동원훈련 II 형은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에서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훈련장소도 다른데요. 동원훈련 I 형은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 II 형"은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 및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비군-예비군훈련-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원예비군훈련의 실시

###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 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

| 구 분 | 입소시간 | 퇴소시간 |
|---|---|---|
| 동원훈련 I 형 | • 육군, 제주도지역: 12:00<br>• 공군, 해군: 13:00 | 17:00 |
| 동원훈련 II 형, 기본훈련 | 09:00 | 18:00 |
| 작계훈련 | 시행부대 통제 | |

▹ 동원훈련 I 형 퇴소시간은 개별입영 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 시에는 집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제1호).

▹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이동 거리가 100km 이상 및 원활한 이동에 제한을 주는 사유 등으로 09:00 입소가 제한 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제2호).

▹ 국직부대의 동원훈련 I 형 입소시간은 12:00시로 적용하며, 국직부대로 입영하는 공군·해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육군 예비군이 공군·해군부대로 입소할 경우 공군·해군 입소시간을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제3호).

**※ 동원예비군훈련 지연 입소자 처리**

**Q)**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나요?

**A)** 동원훈련 I 형은 1시간 이내의 지연 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항제1호).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되고, 만약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는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항제2호).

### 동원훈련 I 형의 훈련방법

▪ 동원훈련 I 형은 전시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과 ②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제1항).

▹ 계획동원훈련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불시동원훈련은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합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동원훈련 I 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I 형은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따른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2호).

▹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전환요원, 동원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단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3호).

▹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동원훈련으로 분·소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과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강 확립 방안 및 현장지도, 평가, 준비사열 등은 각 군 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5호).

▹ 불시 동원훈련 I 형은 상급부대 통제 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실시하며, 국방부 통제훈련(연합연습, 충무훈련), 합참 및 각 군 통제훈련 시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항제10호).

**※ 동원훈련 I 형 훈련 관리**

**Q1)** 동원훈련 I 형을 받기 위해 입영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원훈련 I 형 입영 후 귀가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동원훈련 I 형을 위해 입영한 경우 신체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병역법」 제51조 제1항·제2항).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시간 중 4시간을 이수한 걸로 인정받게 됩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Q2)** 동원훈련 I 형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동원훈련 I 형은 병역법에 따라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1호).

참고로 동원훈련 II 형은 3회 불참한 경우에 고발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항제2호가목 참조).

### 동원훈련 II 형 훈련방법

▪ 동원훈련 II 형은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 I 형 참석여건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 I 형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 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2호).

▪ 동원훈련 II 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

▹ 동원미지정자는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히 실시하고, 기타과목 및 과제는 수임군부대장이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행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4호 본문).

▹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에 대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 I 형 미참석자 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실습위주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4항제1호나목).

※ 그 밖에 동원예비군훈련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그 기간을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4조의4 및 「예비군법」 제10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3조의2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제8항).

만약,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참조).

### 1.2.4. 지역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의 구분

##### "기본훈련"이란?

▪ "기본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참조).

##### "작계훈련"이란?

▪ "작계훈련"이란 지역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참조).

#### 지역예비군훈련의 대상 및 훈련시간

### 지역예비군훈련의 대상

▪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복무 5~6년차 동원미지정 병(兵)을 대상으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 지역예비군훈련 훈련시간

▪ 지역예비군훈련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 참조).

| 구분 | | 지역예비군훈련 | |
|---|---|---|---|
| |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병 | 5~6 년차 | 8시간 | 12시간 |

※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 및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비군-예비군훈련-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의 실시

### 지역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 지역예비군의 입소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항).

| 구분 | 입소시간 | 퇴소시간 |
|---|---|---|
| 동원훈련 I 형 | 육군, 제주도 지역: 12:00 | 17:00 |
| 동원훈련 II 형, 기본훈련 | 공군, 해군: 13:00 | 18:00 |
| 작계훈련 | 시행부대 통제 | |

**※ 지역예비군훈련 지연 입소자 처리**

**Q)** 예비군훈련장에 입소시간 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입소는 할 수 있겠죠?

**A)**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은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하는 경우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제1항제2호).

### 기본훈련 훈련방법

▪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수임군부대장의 판단하에 기타과제를 실시하되,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하는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1호).

### 작계훈련 훈련방법

▪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

▹ 수임군부대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하에 5~6년차를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하여 연 2회(연간 12시간) 작계지역에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가목).

▹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에 실시하는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동맹연습, 지상협동훈련, 호국·충무·화랑훈련,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 등의 부대훈련 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포함한 전 작전요소(민·군·경·예비군)를 통합하여 작전 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 부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다목).

▹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소대는 예비군중대장 위임훈련을 1일 1~2개 소대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과다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라목).

▹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통제 하에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4조제2호마목).

> ※ **지역예비군훈련 불참 시**
>
> **Q)** 지역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A)** 지역예비군훈련은 3회까지 기회를 주고, 3차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 고발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항제2호 참조). 고발 후에도 3차 훈련이 재부과 되며,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제4항 후단).
>
> 지역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 ※ 그 밖에 지역예비군훈련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 예비군훈련 관련 직장 및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2).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8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1항).

## 1.3. 예비군 동원(전시 · 사변 등)

### 1.3.1. 병력동원소집 대상 및 통지 등

#### 병력동원소집 대상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4조).

|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
| --- |
| • 예비역<br>•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br>•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br>•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2항) |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조제2항).

| 계급 | | 연령별 소집기준 |
|---|---|---|
| 장교<br>(「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대장 | 63세까지 |
| | 중장 | 61세까지 |
| | 소장 | 59세까지 |
| | 준장 | 58세까지 |
| | 대령 | 56세까지 |
| | 중령 | 53세까지 |
| | 소령 | 50세까지 |
| | 대위, 중위, 소위 | 43세까지 |
| 준사관 및 부사관<br>(「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준위 | 55세까지 |
| | 원사 | 55세까지 |
| | 상사 | 53세까지 |
| | 중사 | 45세까지 |
| | 하사 | 40세까지 |
| 병(兵)<br>(「병역법」 제72조 및 제83조제1항제9호) | 병사 | 40세까지<br>(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45세까지 연장 가능) |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며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병력동원소집 동원지정 보류

▪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 병력동원소집 동원지정 보류대상자 >**

-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정함)
-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 병력동원소집 통지 및 연기

### 병력동원소집 통지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병력동원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1항).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69조).

▪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 병력동원소집 연기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원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불시동원·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

▪ 소집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FAX·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

※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력동원소집 연기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3항).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1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거동이 가능하거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재감의 경우는 제외)

#### 병력동원소집 직권 연기 처리

▪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훈련에 미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 병력동원소집 연기 취소

▪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전날까지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9항).

### 1.3.2.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 병력동원소집 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

#### 병력동원소집 신체검사

▪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병역법」 제47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병력동원소집 귀가조치

▪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2항).

#### 병력동원소집 복무와 소집해제

#### 병력동원소집 복무

▪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1항).

#### 병력동원소집 소집해제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 병력동원소집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3).

#### 병력동원소집 관련 직장 보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4).

## 1.4. 예비군 관련 처벌과 보상

### 1.4.1. 예비군 관련 처벌 등

#### 예비군훈련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대신 송달받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제7항 및 제95조제5항).

▪ 예비군대원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대신 전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2항).

#### 거주지 이동 미신고 등

▪ 동원훈련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및 제84조제2항).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2항).

#### 예비군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 입영 불응

▪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1호).

> ※ 대리 입영 관련 처벌
>
> Q) 친구가 병력동원훈련을 대신 다녀오면 돈을 준다고 해서 친구 이름으로 대신 입영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 A) 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2항제1호).

###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 고의 훈련 보류 및 연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1항).

-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해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 훈련 보류사유 해소 미신고

▪ 훈련 보류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2항).

## 예비군훈련 임무수행 관련 위반 시 제재

### 지휘관 명령 불복종

▪ 예비군훈련을 위해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2호).

###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 불이행

▪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3호).

## 예비군 병력동원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대신 송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제7항 및 제95조제5항).

### 도망 및 신체손상

▪ 병력동원소집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 입영의 기피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업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4호).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Q) 인터넷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손가락을 일부러 다치게 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방법을 게시글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댓글로 이런 글을 올리면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 받나요?

**A)** 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망 및 신체손상(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과 병역판정검사 기피행위(입영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리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7조의2 및 제86조·제87조제1항).

### 1.4.2.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 예비군훈련 훈련비 등 지급

##### 실비 변상

▪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훈련비, 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병역법」 제52조제1항).

##### 훈련비 지급

▪ 예비군훈련의 훈련비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구분 | | 지급내역 |
|---|---|---|
| 동원예비군훈련 | 동원훈련 I 형 | • 교통비(입소), 급식비: 병무청 지급<br>• 교통비(퇴소), 훈련비: 소속부대 지급<br>• 동원훈련 I 형 조기 퇴소자: 퇴소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되,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퇴소)만 지급 |
| | 동원훈련 II 형 (숙영) | |
| | 동원훈련 II 형 (비숙영) | •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br>• 1일 단위로 지급<br>(다만, 중식 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 지역예비군훈련 | 기본훈련 | • 훈련비, 교통비, 식비 지급<br>• 1일 단위로 지급<br>(다만, 중식 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 | 작계훈련 | |
| 상비 예비군 훈련 | | •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군 지침에 따라 소집여건 및 예산을 고려하여 교통비, 여비 등을 추가로 지급 가능<br>• 상비예비군(장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 가능<br>•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 예비군 부상에 따른 치료 지원 및 치료비 보상

### 치료 지원대상 및 기간

▪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및 「병역법」 제75조제6항제3호).

▪ 치료대상과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항).

▹ 보상금지급대상자: 동원·소집기간에 관계없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

▹ 보상금지급비대상자: 동원·소집기간에 한정하여 치료

▪ 동원·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동원·소집 해제 후 귀가 중에 부상하였으나 보상금지급비대상자인 경우와 복장불량, 지연도착, 신검불합격 등으로 귀가 조치된 사람에게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항).

### 치료비 지급대상

▪ 치료비는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말함)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3항).

1.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 「예비군법」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 (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함)
2. 동원·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위 1.에 해당하는 사람
3. 동원·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위 1.에 해당하는 사람

### 치료비 보상금액

▪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

▪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2항).

### 치료비 지급 신청

▪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비군대원은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예비군대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제5항).

## 예비군 휴업보상금 지급

### 휴업보상금 지급대상

▪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후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단서).

▪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 휴업보상금 지급액

▪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1항 단서).

▪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4항).

> ※ 휴업보상금의 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업보상금 지급 신청

▪ 휴업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 보상청구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 휴업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제3항).

▪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보상금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보상금을 예비군대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5항).

##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전단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전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4항 단서).

### 재해보상금 지급

▪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각각 지급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

▪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 구분 | 지급내역 |
|---|---|
|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아래 3.의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2.5배 |
|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 아래 3.의 각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1.88배 |
| 3. 그 밖의 심신장애 | 다음의 등급에 따른 금액<br>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br>②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br>③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br>④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

▪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

| 구분 | 지급내역 |
|---|---|
|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함)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
|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함)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
| 그 밖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훈 지원

### 보상 대상자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1항).

▪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구분 | | 보상 대상자 |
|---|---|---|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 |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
|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 |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
|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
|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재해사망군경의 유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 보상 대상자로서 보상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에 등록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각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전단·제4항 본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전단·제6조제4항 본문).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예우보상-보훈대상-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부-예우보상-보훈대상-보훈보상대상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민방위

### 2.1. 민방위대의 조직

#### 2.1.1. 민방위의 대상

**민방위의 이해**

**"민방위"란**

▪ "민방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대 설치 및 임무**

▪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평상시의 경우**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해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의무적 민방위

###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까지 대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예비군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 근무하는 교원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 대체역(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학생 및 산업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학생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 학생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다음의 심신 장애인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함)의 진단에 따라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 민방위대 대원 지원

### 민방위대 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민방위 대원 지원 신청

▪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민방위대 편입지원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민방위대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방위-민방위대의 조직-민방위대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자격 상실

▪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사람이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사람이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민방위대 편성 제외

▪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2.1.2. 민방위대의 종류

#### 민방위대 구분

####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

▪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함)로 구분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2항).

▪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5항).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 다음과 같은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리 민방위대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 위 1.의 통·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위 2.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 읍·면·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후단).
  - 이 경우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 민방위대 편성 절차

### 편입조치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2항).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위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3항).

### 편성 및 이동사항 등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나 그 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다음의 사람은 제외)이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 군인
  - 예비군
  -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사람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편성결과

▪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

### 지역 민방위대

#### 지역 민방위대 편성 대상

▪ 지역 민방위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3항).

- 통·리 민방위대: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 민방위기술지원대: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6항).

#### 지역 민방위대 대장의 지정

▪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

▪ 통장·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8항).

#### 지역 민방위 대원 이동사항

▪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

▪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 구분 | 직장 민방위대 설치 직장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함)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 | 2.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
| 공공기관 및 업체 |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 |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 5.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 6.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
| | 7.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
| | 8. 그 밖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직장 민방위대 대장의 지정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하되,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7항).

▪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람이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8항).

### 직장 민방위대 대원 이동사항

▪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 위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직장 민방위대 해체

▪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했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않은 경우
- 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2.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

### 2.2.1.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 교육훈련

▪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후단).

##### 본교육

▪ 본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 구분 |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 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참여형 교육 |
|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 지원(여성) 대원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 일반주민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 민방위대 교육훈련 중 사이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충교육

▪ 위 본교육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또는 <국민안전24-민방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 실시 및 복종의무

▪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

### 교육훈련 소집 통지

▪ 민방위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전단).

▸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후단).

> **※ 민방위대 교육훈련 불참**
>
> **Q)** 사정이 생겨서 민방위대 교육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A)**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보충교육에도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 교육훈련 면제 대상

▪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 **※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참여자 민방위대 교육훈련면제**
>
> **Q)** 재해예방 활동에 참여한 경우 민방위대 교육훈련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 **A)** 지자체 주관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및 봉사단체를 통한 개인 참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안전 관련 봉사시간이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같은 해에 재난 수습·복구 활동은 여러 번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도 면제로 인정됩니다.
>
> (예시) 2년차 민방위 대원이 안전 관련 봉사시간 8시간인 경우 해당 연도 교육면제와 다음 연도 교육 면제 신청 가능함(이월은 다음연도까지로 제한하며, 교육의무시간 이상일 것)
>
>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 교육훈련 면제 신청 및 승인

▪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본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유예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훈련 면제 사유 소멸

▪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다만, 해당 연도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운영 중에 면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은 면제됩니다(『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유예

### 교육훈련 유예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훈련 유예 신청 및 승인

▪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 교육훈련 유예 사유 소멸

▪ 교육훈련을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교육을 재시행합니다(『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

> ※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면제 및 유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2026년 민방위대 교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 2.2.2. 민방위 대원 동원

### 민방위대 동원 명령

#### 동원 명령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민방위 대원 동원 가능한 경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동원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후단).

#### 동원 명령의 방법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으로 민방위 대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사이렌·타종·경적·신호기
-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 동원 시 복종의무

▪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 민방위대 동원 명령의 유예

#### 동원 명령 유예 대상

▪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원 명령 유예 신청

▪ 동원을 미루려는 사람은 동원 유예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 민방위대 동원 해제

#### 동원 해제

▪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5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동원 해제 명령은 동원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민방위대 동원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 민방위대 동원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 2.3. 민방위 관련 처벌과 보상 등

### 2.3.1. 민방위 관련 처벌 등

#### 민방위대 편성 관련 위반 시 제재

#### 민방위 편성 관련 신고조치 불이행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아래 1.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

1.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과 그 사유가 소멸된 사람이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 대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2.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직장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2항)
3.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 직장 민방위 대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4.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방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3호).

#### 교육훈련 시 명령 불복종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3호).

#### 민방위 동원 관련 위반 시 제재

#### 동원 명령 불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동원 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4호).

#### 민방위 수행 시 명령 불복종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4호).

### 2.3.2.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에 따른 실비 등 지급

####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고,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현장 등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식비, 숙박료, 교통비 지급 기준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9)**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 지급액 | 일반실 운임 정액 | 2등급 운임 정액 | 2등 운임 정액 | 정액 | 30,000 | 20,000 |

####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한 경우 사용료 지급

▪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3항).

▹ 이 경우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와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를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 민방위 대원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 및 치료

####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및 치료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에 따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민방위 대원 휴업보상금 및 재해보상금 지급

### 휴업보상금 지급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후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단서).

▪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본문).

▹ 다만, 그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단서).

### 재해보상금 지급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전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단서).

▪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사망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

| 장애등급 | 장애보상금 지급액 |
|---|---|
| 1급 | 사망보상금의 12/12 |
| 2급 | 사망보상금의 11/12 |
| 3급 | 사망보상금의 10/12 |
| 4급 | 사망보상금의 9/12 |
| 5급 | 사망보상금의 7/12 |
| 6급 | 사망보상금의 6/12 |

### 보상금 등 지급 신청

▪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을 포함)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서에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가 부담하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보상금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